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9.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37호
2. 발 의 자 : 이 호 원 의원 등 37명
3. 발의일자 : 2025년 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원회 설치 근거와 서울특별시의 위원회 설치근거가 다른 바 관련 조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위원회 설치 근거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각 호는 삭제함(안 제3조의2제1항)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2.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5. 8. 20. ~ 2025. 8. 24.) 결과: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이효원 의원 등 37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937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위원회 설치 근거와 서울특별시의 위원회 설치 근거가 다르므로 관련 조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각 호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안 제1항 본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¹⁾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

1)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한정 하였습니다.

[표-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7.]
[서울특별시조례 제8464호, 2022.10.17., 일부개정]) 개정 현황

개정전	개정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시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u> 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u>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u> 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 소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정 당시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를 각 호²⁾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여전히 법령 및 조례 이외에도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까지 설치 근거로 규정(제3조의2제1항제3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령이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대상 기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구별하는 것으로 동 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2(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생략

례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의 개념으로 본 것이라 사료됩니다.

○ 그러나 동 조례의 목적 규정인 제1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조는 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소관 사무에 관한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담당부서 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행정기구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바,³⁾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더욱이 동 조례는 적용범위에 있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도록 규정(제3조의2제2항⁴⁾)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조례로서 보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 조례는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동 개정조례 안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직 체계상 동 조례의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본청)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4) 제3조의2(적용범위) ① (생략)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조례는 본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적용하기에는 운영상의 한계가 있으며 조례 개정시 관리 대상 위원회가 급증(약 5배)함에 따른 관리 체계도 미비한 실정인바, 적용대상을 교육지원청을 제외한 직속기관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0439, 2025. 8. 20.).
- 그러나 동 조례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적용 대상이 본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동 조례가 본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교육청의 의견은 오히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동 조례에 따른 위원회 관리를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전체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만 하였고, 이에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관리 대상 위원회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적용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및 관리 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관리 편의성만을 이유로 조례상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동 조례가 위원회 설치·운영의 권한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장’ 또는 ‘직속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교육장 또는 직속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이나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되며, 해당 법률

이나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해당 조례의 위임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만을 가지고 동 조례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은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현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되는 위원회가 다수 있는바⁵⁾,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본청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림-1] 서울특별시 위원회관리시스템⁶⁾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 (2180-8263)	입법조사관	이기영 (2180-8270)
----------	--------------------	-------	--------------------

5)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자체계획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총 228개임(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요구자료 1821).

6)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위원회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참조.